

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서

고성군수(갑)가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장(을)에게 2012년 「노인 일자리 사업」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「노인일자리사업」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사업명	사업유형	사업량	계약체결금액	비 고
계				
스쿨존교통지원사업	공익형		—	
문화관광해설사사업	교육형		—	
실버소양교육	교육형		—	
실버스마일사업	복지형		—	
어르신근로자파견사업	인력파견형		—	

제2조(위탁기간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2. 3. 2.부터 2012. 12. 31.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“갑”的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,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) “을”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① 위탁사업은 스쿨존교통지원사업, 문화관광해설사사업, 실버소양교육, 실버스마일사업, 어르신근로자파견사업으로 한다.
- ② 대상 사업지역은 “갑”的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.(일부사업 60세 이상)
- ④ 주 1~5일 근무하며, 근무시간은 월 42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- ⑤ “을”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,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용) 『노인일자리사업』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을”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,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비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.
- ③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보수는 월 200,000원으로 한다.

제5조(장부 등의 비치) “을”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사업신청 제반서류,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참여조건합의서,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, 보수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근무관리대장, 활동일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 등

제6조(사고책임) ① “을”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“을”이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,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
③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갑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“갑”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“을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

① 『노인일자리사업』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수시 『노인일자리사업』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)

① “을”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~~여수 등~~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약)

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갑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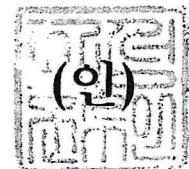
제10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갑”的 결정에 따른다.

제11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2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2 월

“갑” 고 성 군 수



“을”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장

